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9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일부 개정 조문이 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물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 제5조제1호 중 “마련할”, 제6조제2항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마련하여”, 제18조제3항 중 “마련하거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축을 해제할”을 현행과 같이 함.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물환경보전법」”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마련할”을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제1항에”를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안 제18조제1항 “마련하여”, 같은 조 제3항 중 “마련하거나”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19조제4항 중 “환경영향으로 인한”을 “환경영향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2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할”을 현행과 같이 한다.



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 사업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 3. (생략)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5. (생략)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

-----  
-----  
-----  
-----  
----- 마련하  
여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  
-----  
-----.

1. -----  
-----  
-----  
----- 마련할 --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물  
환경보전법」 -----  
-----

5.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  
-----  
-----.

1. (현행과 같음)

2. ~ 3. (개정안과 같음)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개

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 ⑥ (생략)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생략)

〈신설〉

----- 시행하려는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수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렴하려는 -----  
-----  
-----  
-----  
-----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

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견수렴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





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0조(협약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약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략)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

재개하려는
-----
-----
-----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약내용의 관리·감독) ①
-----
-----
-----
-----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직접·간접-----

⑥ (개정안과 같음)

제20조(협약내용의 관리·감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⑧ (개정안과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
-----
-----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 ⑨ (생략)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을 해제할 —.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 따른다.

⑧ ~ ⑨ (개정안과 같음)

제24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제33조(준용)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수립하고자 하는”을 “수립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대행하고자 하는”을 “대행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한 차례만”을 “한 번만”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환경영향으로 따른”을 “환경영향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개하고자 하는”을 “재개하려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제2호 중 “직、간접”을 “직접、간접”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예산”을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제33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u>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u>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            --- <u>시행하려는</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u>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u>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수렴하려는</u> -----            -----            -----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u></p>

〈신 설〉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 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의 평가항목 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_\_\_\_\_  
\_\_\_\_\_ 대행하려는 \_\_\_\_\_  
\_\_\_\_\_.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한 번만 \_\_\_\_\_.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_\_\_\_\_  
\_\_\_\_\_ 환경영향에 따른 \_\_\_\_\_  
\_\_\_\_\_  
\_\_\_\_\_  
\_\_\_\_\_

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0조(협약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약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 ⑨ (생략)

\_\_\_\_\_.

⑤ \_\_\_\_\_  
\_\_\_\_\_ 재개하려는 \_\_\_\_\_  
\_\_\_\_\_.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약내용의 관리·감독) ① \_\_\_\_\_  
\_\_\_\_\_ 하려는 \_\_\_\_\_  
\_\_\_\_\_.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_\_\_\_\_  
\_\_\_\_\_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직접·간접 \_\_\_\_\_  
\_\_\_\_\_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_\_\_\_\_  
\_\_\_\_\_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_\_\_\_\_.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_\_\_\_\_  
\_\_\_\_\_ 따른다.